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유형별 전문지도자 양성 및 청각장애 전문지도자 고용 확대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82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애유형별 전문지도자 양성 및 청각장애 전문지도자 고용 확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7. 31.
3. 회 부 일: 2025. 8.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 채용에 관한 별도의 시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목인 특수체육론이 존재하지만,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도자 채용에 있어서 수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선수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7항 등).

Ⅲ. 검토의견

1. 장애유형별 전문 체육지도자 양성 및 청각장애 전문 체육지도자 고용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1조제2항 신설).
- 개정안은 수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4조제7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생략) <u><신설></u>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 국가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3항----- ----- ----- -----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 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 마다 <u>제11조제3항</u>에 따른 스포츠운 리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은 <u>제11조제2항</u>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정지 및 제14조 의4에 따른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등 활동 금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 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 ----- ----- ----- ----<u>제11조제4항</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 ③ (현 행과 같음) <u>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 또 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 선수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수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 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u>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 -----<u>제11조제3항</u>-----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

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뜻하며,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됨¹⁾.

○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활동 차별금지 의무를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함을 규정함²⁾. 이를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첫째, 개정안은 청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 선수의 효율적 지도를 위한 규정만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 등 타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수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체육지도자 취득에 있어 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현재,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은 자격검정(필기시험, 실기구술시험) 및 연수운영 후 자격증을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연수과목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지도를 위한 한국수어”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수어 관련 내용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³⁾.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와 관련하여 포괄적 문구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⁴⁾.

3) 참고자료: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사업 개요 참고

4) 문화체육관광부 수정안

현행	개정안	문체부 수정안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 ③ (생략) <신설>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 선수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수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선수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수어 활용 능력 등 장애유형별 지도방법이 포함된 연수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

-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자격검정 과정에서는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응시종목의 수행능력 등을 검정하고 수어 등 장애 유형별 지도에 필요한 교육은 연수과정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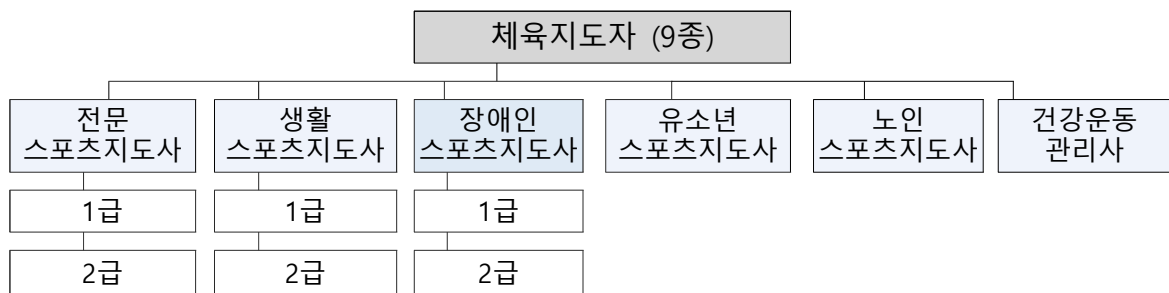
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사업 개요

I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국민 체육활동을 지도할 우수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해 국가자격제도 운영
-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 양성)
- ☐ (자격종류) 총 9개 자격



- ☐ (취득절차) 필기시험 → 실기구술시험 → 연수 → 자격증 발급
- ☐ (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및 4개 자격검정기관(공단, 체육회, 장체회, 국기원)

필기시험(4월)	실기구술시험(6~7월)		연수(8~12월)	결격조치	자격증 발급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건강운동관리사	대한체육회 전문, 생활, 유소년, 노인 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공단 3개 연수원 1급 전문, 생활,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범죄경력조회, 사전통지서·처분서, 자격취소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문, 생활, 유소년, 노인,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국기원 전 자격 태권도 종목	61개 연수원 전문, 생활, 유소년, 노인,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문체부 자격운영위원회	전문, 생활, 유소년, 노인,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자격검정 운영기관(4개)]

- 스포츠지도사 : 대한체육회 산하 72개 종목단체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29개 종목단체
- 스포츠지도사(태권도 종목) : 국기원
- 건강운동관리사 : 국민체육진흥공단

- ☐ (사업예산) 4,997백만원(공단 2,670백만원, 체육회 2,107백만원, 장체회 220백만원) / '25년 기준

- ☐ (취득인원) 누적 406,028명 / '24년 21,513명 자격취득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24	계
계	277,841	14,673	16,633	1,843	27,772	22,037	23,716	21,513	406,028
장애인 체육 지도자	1,485	541	2,734	2	1,971	1,188	993	1,139	10,053

II 자격검정 및 연수 운영 체계

□ 필기시험

- (대상자격) 9종류
 - 전문스포츠지도사(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1·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 (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응시대상) 만 18세 이상으로 자격종류별 응시요건 구비자
- (시험과목) 자격종류별 총 4~8개 과목(객관식 4지선다형)
 - * 합격기준: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대상자격) 8종류(1급 전문 실기·구술시험 없음)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 (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기원, 대한장애인체육회
- (응시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 (시험종목) 전문 58개, 생활 66개, 유소년 62개, 노인 60개, 장애인 37개, 건강운동관리사 4개
 - * 합격기준: 실기·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연수운영

- (대상자격) 9종류
 -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 (연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4개 연수원
 - (연수대상) 자격검정(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 (연수과정) 일반과정 및 특별과정. 단, 기존 연수면제 대상(체육교사, 국가대표, 추가취득 등)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
- * 이수기준: 일반수업 및 현장실습 연수과정 각각의 100분의 90 이상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지도·현장실습 평가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참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시간 및 교육내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4.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

□ 연수시간

자격 구분	과정	총 시간	연수과정		
			일반수업	현장실습	현장실습비율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일반/특별	250	178	72	28.8%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일반	90	60	30	33.3%
	특별	40	<u>32</u>	<u>8</u>	<u>20%</u>

□ 연수내용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분야	연수내용	시수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공정경쟁, 도핑 방지, 스포츠와 법	14
선수관리	○건강 및 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영양 관리, 안전사고 예방	32
지도역량	○선수선발 및 스카우팅, 운동능력 평가 및 운동수행, 스포츠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연습 및 경기 프로그램 기획·운영, 스포츠의학 지식	56
코칭실무	○코칭철학, 경기상황에서의 전략, 훈련 및 경기 관련 계획 수립·관리	28
스포츠 매니지먼트	○국제대회 참가, 선수 경력 관리, 선수단 관리, 미디어 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48
계		178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분야	연수내용	시수	
		일반과정	특별과정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도핑 방지, 스포츠와 법	6	3
장애특성 이해	○인지, 정서 장애인 특성에 따른 스포츠지도, 자폐장애인 특성에 따른 스포츠지도, 시·청각 장애인 특성에 따른 스포츠지도	14	10
지도역량	○장애특성별 운동프로그램, 운동기술과 체력의 진단 및 평가, 통합체육 이해와 적용 방안,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체육지도 방법	32	15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지도를 위한 한국수어, 스포츠시설 및 용품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 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8	4
계		60	32